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4. 16.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87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4. 2.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나. 상정의결

-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 4. 16.)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현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중 4호 개정 및 5호를 신설하여 청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청년지원의 근거 마련
- 제15조의2(청년지원 등)를 신설하여 청년 활동 및 구직 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방법·지원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45억원 기반영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코로나19 확산에 사회 전반적인 고용환경 악화로 실업 상황에 놓인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사회진입 활동 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시간제·단기·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에는 고용 보험 조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¹⁾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구 거주 실직청년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실직청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음. 이는 재난으로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창업 등 사회진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임.

□ 사업명 :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26일(월) ~ 12월 31일(목)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강남구 거주 20~39세 청년

□ 지원규모 : 500,000천원(1인당 50만원×최대 2개월, 총500명 지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요건 * 지원기간 중 전출 및 취·창업 등 상황변동 시 지급중단

(거주)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공고일 전일 기준 전입)

(나이) 20 ~ 39세 청년

(조건)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 후 2020.1.30.(WHO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이후 공고일 전일까지 비자발적 실직 청년

(소득) 가구원 소득이 2020.9.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한편, 이 조례안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반회계로 청년에게 사회보장적 성격의 비용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²⁾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하고 ‘공공부조’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 청년의 구직활동 등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도는 사회보장의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청년지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³⁾에 따라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짐. 한편, 같은 법 제19조4)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1년도 시행계획’에 이미 ‘청년 구직활동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다음은 정부·서울시·강남구의 청년지원 사업을 구체화한 내용임.

추진기관 내용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강남구(案)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지원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수당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연령	만18세 ~ 34세	만19세 ~ 34세	만19세 ~ 34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없음
재산기준	가구 3억원 이하	없음	없음
학력	없음	최종학력 졸업·중퇴 이후 2년 이상	최종학력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취업상태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내)	미취업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가능)	미취업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가능)
신청기간	연중 상시	2021. 2. 23. ~ 2021. 3. 3.	5월 예정
지원목적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 소득 결합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구직활동비)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 촉진 및 생활안정 확보
지원인원	미정 (청년 외 각 계층 동시 접수)	20,000명	8,900명
지원규모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50만원 (일회성 지원사업)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사후관리	· 구직활동계획서·보고서 제출	· 활동계획서 작성(활동목표,지원동기 등)	없음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既) 참여 지원대상자는 제외

○ 한편, 2020.2.4.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청년’의 정의를 제3조제1항5)에

4)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에 따라 우리구 조례⁶⁾에서는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지원사업에서는 모두 동일한 연령(만 19세~ 34세)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 규정과 대상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일회성 지원이라고 하지만 매년 새로운 지원대상 연령층이 생겨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4호에서는 기존 ‘청년활동’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및 그 지원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보이나 그 지원을 청년활동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현행규정⁷⁾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제5호에서는 ‘청년지원’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나 조례 본문에서는 인용되고 있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5조의2(청년지원 등)제1항에서는 미취업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언상 사회보장 성격의 활동비로 보이나 이러한 활동비의 성격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볼 때 지속적인 사회보장계획의 일환인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인지, 아니면 재난시에 지급하는 한시적인 ‘미취업장려지원금’인지 그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짐. 제3항에서는 ‘활동비’ 등의 사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범위를 이탈하여 사용한 경우 환수규정 등이 없고 사후 사용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는 바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다만, 일상적인 청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강남형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이 45억1천만원 편성되어 1인당 300만원(6개월×월5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음. 따라서 조례안에 따른 규율 내용과 예산편성⁸⁾된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는 바 논의가 필요해 보임.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8) <202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강남형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신규)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발의자께서는 해당 개정 조례안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 시 한시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부조적 성격이 아닌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그 외에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총사업비 : 4,510,000천원
 - 사업대상 : 20세~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자
 - 사업규모 : 1,500명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최대6개월)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비, 간접비 지원
 - (직접비) 학원 수강료, 교재·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 (간접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방법 : 정량평가(서류검증 및 선정위원회 구성)
 - 주소, 소득기준, 취업여부, 재학 여부 등 서류검증
 - 국가,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후 지급(중복지급 불가)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클린카드(체크카드)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87호

제안일자 : 2021.4.16.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재난 시 지급하는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며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조)
- 일시적인 재난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조항의 신설 및 삭제(안 제15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20세” 를 “만 19세”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4. “청년활동” 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장려금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u>20세</u>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u></p> <p>5. <u>“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u></p>	<p>제2조(정의) ----- ----- -----.</p> <p>1. ----- ----- ----- <u>만 19세</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u></p> <p><u><삭 제></u></p>

을 말한다.

6. (생략)

제15조의2(청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수강료,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5. (개정안 제6호와 같음)

제15조의2(청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장려금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직접경비

2. 식비, 교통비 등 구
직활동에 필요한 간
접비 등

④ 제1항에 따른 활동
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은
그 지원사업의 공고
기간 내에 구청장 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⑤ 활동비 등의 지급을
위해 그 외 필요한 세
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연월일 : 2021. 4. 2.

발의자 : 김현정·박다미·이재민·
김영권·복진경·김세준·
허주연·이향숙·문백한
(이상9인)

1.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중 4호 개정 및 5호를 신설하여 청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청년지원의 근거 마련

나. 제15조의2(청년지원 등)를 신설하여 청년 활동 및 구직 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방법·지원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구비)에 45억원 기 반영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수강료, 교재비, 시험응시료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2. 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간접비 등
- ④ 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은 그 지원사업의 공고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활동비 등의 지급을 위해 그 외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청년활동</u>”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p> <p><u><신 설></u></p> <p>5.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활동</u>”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u>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u></p> <p>5. “<u>청년지원</u>”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15조의2(청년지원 등) ① <u>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의 사용범</u></p>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수강료,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2. 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간접비 등

④ 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은 그 지
원사업의 공고기간 내에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활동비 등의 지급을 위해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